

『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5월 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5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08년 5월 19일

제1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석 태 룡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선산읍 교리, 화조리, 동부리 일원에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「도시개발법」,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(제8조)
 -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 등을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
 - 특별회계재원의 용도 범위기준을 정함.

- 사업시행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하여 운용
 - 환지계획(토지평가, 체비지, 청산금등)
 - 각종 증명서 서식(별지 1 ~ 별지 5)

라. 참고사항

- 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제4항
- 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18조제3항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나 명 철

○ 본 제정 조례안은

- 교리2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「도시개발법」 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 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를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 및 특별회계재원의 용도 범위기준을 정함(안 제8조)
- 사업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및 환지계획 및 각종 서식 마련

○ 검토 결과는

-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「도시개발법」 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